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6. 24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6월 18일

○ 회부일자 : 1994년 6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0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94. 6. 2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국제통상협력실장 심 상 결)

가. 제안이유

○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화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준칙 시달

(내무부행정 19304 - 29) '94. 2. 21

○ 당면한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나. 수정 제안이유

- 기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 조정 기능이 주어져 있어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관련사항의 기능 보강
- 전면적 국제화·개방화에 적극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다. 주요골자

- 협의회는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의 설정, 국제도시간 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 주민의 국제화 의식제고 및 국제화 홍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함.
-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회장을 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민·관·산·학의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

라. 주요 수정 골자

- 당초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조례명을 "국제화 추진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함.
- 국제교류협력에 국한된 위원회 기능을 농업·특화사업등의 국제화 시책 개발, UR·GR등 국제통상대책추진, 지방과학기술진흥 방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함.

- 기 제출된 "조례안의"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등의 실무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음.
- 위원회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뿐만아니라, 국제통상 및 교류 협력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자의 의견을 들으 수 있도록 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 위 원 노 재 청)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수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 직제개편으로 인해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고 '94년 5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서는 국제교류협력에 국한된 협의회 기능만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로 조례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 사항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화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과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각 분야의 참여속에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있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농업·특화사업등의 국제화 시책 개발, UR·GR등 국제통상대책추진,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등과 국제화에 관련한 필요 인정사항등을 심의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성위원수에 있어서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에 있어서는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공청회개최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본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 문 답 변 요 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안대로 가결 (참석 8, 찬성 8)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
-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수정 조례(안)